

(우) 04373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0 삼구빌딩 7~8F [http://www.kma.org]/전화(02)6350-6548 / 전송(02)790-8911
보험정책국 국장 김기성(6574) / 보험팀장 백영기(6581) / 팀원 이연주(6548) / email: kma6350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813-03224호

시행일자 2020. 6. 17.

수 신 각시도의사회장, 각전문과목학회장, 대한개원의협의회장, 각과개원의협의회장

참 조

제 목 **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관련 격리실 입원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**

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근거 :

-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922호 (2020.2.24.)
-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-13856호 (2020.2.24.)
-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2494호 (2020.6.15.)

3. 위와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신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, ‘가10 격리실 입원료’ 요양급여비용 산정 및 청구방법을 다음과 같이 추가 안내해온 바, 이를 전달해 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님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가. 급여대상 : 대상기관에 신규 입원하는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환자

나. 격리기간 : 입원 당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[실시간역전자중합효소연쇄반응법]검사를 시행하고, 검사결과가 나오는 날까지 1인 격리한 경우 1일만 산정

다. 본인부담 : 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에 따라 본인부담률 50% 적용

라. 적용 : 2020.5.13. 진료분부터 적용

붙임 : 코로나바이러스-19관련 신규 입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
안내 1부. 끝.

대한의사협회장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